
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장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70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30.

발 의 자 : 김장겸 · 안철수 · 박덕흠
추경호 · 최은석 · 서범수
이상휘 · 서천호 · 강대식
인요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등에 정정보도,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고,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. 또한,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규정하면서 언론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조정 또는 중재 기간이 길어져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 요건 충족이 더 까다로운 「민법」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,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제소기간 도과 방지를 위해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안내하는

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중복되고 조정·중재 등 구제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청구등을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적법한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봄으로써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6조 제9항 신설).
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등, 제18조에 따른 조정신청 또는 제24조에 따른 중재신청을 적법한 기간 내에 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가 제기한(제22조제4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제1항에 따른 소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정정보도청구등의 수용 여부를 통지받은 때
2. 제21조에 따라 조정 결정이 있을 때
3. 조정신청이 취하(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때
4. 중재신청이 취하(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소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을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정정보도청구등의 소) ① ~ ⑧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6조(정정보도청구등의 소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 ⑨ <u>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등,</u> <u>제18조에 따른 조정신청 또는</u> <u>제24조에 따른 중재신청을 적</u> <u>법한 기간 내에 한 경우에는</u> <u>해당 피해자가 제기한(제22조</u> <u>제4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</u> <u>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</u> <u>제1항에 따른 소는 제3항에 따</u> <u>른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</u> <u>본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</u> <u>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</u> <u>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</u> <u>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</u> <u>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1. <u>정정보도청구등의 수용 여부</u> <u>를 통지받은 때</u> 2. <u>제21조에 따라 조정 결정이</u> <u>있을 때</u> 3. <u>조정신청이 취하(취하로 간</u> <u>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</u> <u>때</u>

	<u>4. 중재신청이 취하(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때</u>
--	--